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임시숙소 시설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일시사용 신고시설로 도입하고, 국가첨단전략사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연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과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입목축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토석채취허가지의 확대를 통한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 채석경제성평가 시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의 시추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그동안 산지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의 재량범위 축소(안 제4조제3항)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를 삭제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

나. 임업용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 허용(안 제12조제6항제6호 신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임업용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를 허용

다.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안 제12조 제13항제13호 신설, 제18조의4제4항, 별표 3의3 제8호 카목 신설)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임시숙소 시설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일시사용 신고시설로 도입하고 설치조건 등을 정함

라. 등록전환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면적 증가를 보전산지에서의 면적 제한 적용의 예외로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으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또는 산지전용신고된 면적이 오차범위 내 증가하는 경우는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중 면적제한의 적용 예외로 규정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안 제25조의2제8항, 별표 5 비고 제7호) 허가 취소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산지에 산지전용 등을 할 경우 당초 형질변경으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부과시점의 부과단가 차이에 따른 수허가자 부담 완화

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기준 완화 (안 제32조제2항제3호)

산지전용 등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을 현행 10만³미만에서 20만³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역여건 또는 사업성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사. 토석채취지 조사·점검을 수행하는 산지전문기관 추가(안 제45조 제7항)

토석채취지 재해예방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토석채취지에 대한 조사·점검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산지전문기관으로 「산지관리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추가

아. 국가첨단전략사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등의 경우 적용되는 ha당 입목축적 기준의 예외를 인정(안 별표2, 별표4)

국가첨단전략사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입목축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자. 자기소유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산지전용신고시설 규정(안 별표3)

산지전용신고 시 임업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등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차. 산지전용신고 시 설치지역 관련 공익용산지의 중복규제 해소(안 별표3)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등 공익용 산지의 지정인자가 되는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른 설치지역을 적용하도록 하여 산지전용신고시 공익용 산지 관련 중복규제 해소

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정비 [안 별표 4 제1호마목1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축조되는 단독주택은 산지전용 대상 산지의 소유권 확보 관련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확보 등의 요건을 따르도록 하여 법령적용의 일관성 확보

타. 공장 증축을 위한 산지전용 시 도로기준의 예외 신설(안 별표4 제 3호가목)

기존 공장의 증축을 위한 새로운 산지전용허가 시 증축되는 공장을 위한 진입로(도로)는 기존공장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을 정함

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명확화(안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관련 타 법령의 감면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의미 명확화 등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 정비

하.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채석경제성평가지 시추탐사 완화(안 별표7)

채석단지는 대부분 기존 토석채취허가지를 확대하여 지정(94%)되고 있어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채석경제성평가 수행 시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의 시추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거. 토석채취허가기준 관련 중복규제 해소(안 별표8 제8호가목)

토석채취허가 전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토석채취허가기준 검토를 위한 산지경관영향 모의실험 실시를 제외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보호를”을 “보호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마목에 따른 데이터센터 시설

제12조제1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에서 산지의 소유자가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산촌채류형 쉼터(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한 임시숙소로 총 부지면적 1백 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33제곱미터이하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면적 적용의 예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의 신청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 면적에 대한 측

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차의 허용범위 내에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의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3항제13호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기준을 따르되, 건축조례로 연장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할청은 별표 3의3 제8호카목의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8항 중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을”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10만세제곱미터”를 “20만세제곱미터”로 하고, “경우”를 “경우. 다만,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역여건 또는 사업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를 말한다. 다만, 한국산림토석협회의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다른 법률에 따라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별표 2 비고에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연구시설은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설치조건란 중 “부지면적”을 “자기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가능하며, 부지면적”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설치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 2)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같은 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3의3 제8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별표 비고 제4호 중

“제1호에서”를 “제1호 및 제8호에서”로 한다.

<p>카. 산촌체류형 쉼터</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1)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2) 공익용 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같은 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해당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1)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에서 산지의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한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총 부지면적이 1백 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쉼터가 위치하는 자기 소유의 산지의 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해당 산지의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것 3) 다음의 지역·지구 외의 산지에 설치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붕괴위험지역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 4)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p>
--------------------	--	--

		<p>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할 것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p> <p>5) 건축물의 연면적이 33㎡이하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일 것</p> <p>6) 해당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하려는 산촌체류형 쉼터 외에 동일인이 전국에 걸쳐 추가로 산촌체류형 쉼터의 설치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이미 설치한 산촌체류형 쉼터가 없을 것</p> <p>7) 산지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p> <p>8)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 것</p> <p>9) 별표4 제1항 마목 10)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것. 다만, 임업인의 경우 자기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p>
--	--	---

		<p>10) 쉼터(가설건축물) 실외에 소각시설, 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p> <p>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할 것</p> <p>12)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산촌채류형 쉼터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p>
--	--	---

별표 4 제1호마목11) 중 “갓출 것)”을 “갓출 것).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확보 등의 요건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적용대상사업 ‘공장’의 세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부지 면적(「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마목 10)의 도로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존공장 부지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

가) 기존공장에서 증설 대상 공장이 위치하는 산지로의 부지 편입은 1회에 한할 것

나) 기존공장에 추가 편입되는 부지의 면적은 기존공장 부지면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다)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까지 기존공장부지와 추가 편입되는 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4 비고에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

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연구시설은 제2호 다목 세부기준란 3)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5 제1호타목 대상시설란 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단서 중 “재생에너지설비는”을 “재생에너지설비 및 풍황계측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바목1)부터 바목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사목1) 및 사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의 시설
-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설치하는 제조시설

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의 시설

- 1)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별표 5 제3호마목4) 및 같은 호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산시설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축사시설

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 수행에 앞서 실시되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처. 다른 법률에 의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시설 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조합등,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 업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재산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조합등, 중앙회 및	100	100
--	-----	-----

수협은행이 업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재산 3) 「산림조합법」 제8조의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재산 4) 「중소기업은행법」 제50조의 중소기업은행이 업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재산 5) 「협동조합기본법」 제99조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업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재산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산업기술단지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7조의 문화산업단지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을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이전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10조의 이전사업 시설		
--	--	--

별표5 비고 제3호 중 “농림어업인이”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면한다.”를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종전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채취하던 허가구역을 포함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채석경제성평가의 시추탐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별표 8 제8호가목 단서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

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3항제13호, 제18조의4제4항, 별표3의3 제8호카목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2 및 별표4 비고 제1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된 사항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기소유 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3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 증축 관련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7 제1호나목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채석경제성평가에 관한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석채취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8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을 신청하거나 채석단지를 직권으로 지정·변경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생략)</p> <p>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p> <p>1. ~ 5. (생략)</p> <p>6.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u>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u></p> <p>7.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u></p>	<p>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u>보호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u> ----</p> <p><u><삭 제></u></p>
<p>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⑤ (생략)</p> <p>⑥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 3. 삭 제</p> <p>4.·5. (생략)</p> <p><u><신 설></u></p>	<p>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p> <p>4.·5. (현행과 같음)</p> <p>6. <u>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설치</u></p>

⑦ ~ ⑫ (생략)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12. (생략)

<신설>

⑭ (생략)

<신설>

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따른 데이터 센터 시설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

1. ~ 12. (현행과 같음)

13.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에서 산지의 소유자가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한 임시숙소로 총 부지면적 1백 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⑭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면적 적용의 예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의 신청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 면적에 대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차의 허용범위 내에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의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 ③ (생략)

<신설>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3항제13호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기준을 따르되, 건축조례로 연장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 ⑦ (생략)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한다.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략)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

다만 관할청은 별표 3의3 제8호 카목의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을 -----
 -----.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p>4. ~ 7.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 ⑥ (생략)</p> <p>⑦ <u>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말한다.</u></p> <p>⑧ · ⑨ (생략)</p>	<p><u>사업성격 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u></p> <p>4. ~ 7.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를 말한다. 다만, 한국산림토석협회의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다른 법률에 따라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u></p> <p>⑧ · ⑨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141